

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170
------	------

2019. 11. 28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11.2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
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)

1. 제안이유

가. 새로운 경제발전 대안모델로 주목받는 협동조합은 지난 '12년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'13년 「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- 나. 이에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」를 '14.2.1. 개소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 및 협동조합 정책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음
- 다. 이러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난 '13.9.13.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게 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
- 위 치 : 은평구 통일로 684(서울혁신파크 1동 6층)
- 규 모 : 92.1㎡(센터장실, 사무실, 자료실, 회의실, 상담실 등)
- 조직구성 : 11명(센터장 1, 행정지원팀 2, 상담지원팀 3, 성장지원팀 5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2020.1.23. ~ 2021.1.22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○ 소요예산(안) : 1,086백만원

(인건비 526, 운영비 90, 사업비 470)

○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

-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
-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
-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,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
-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
-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홍보
-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해당 업무의 직접 수행시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
신규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
어려움 발생 우려
-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및 상담지원 경험 등을 갖춘 민간
전문기관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(2013.9.13.) 6년이 경과¹⁾하게 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협동조합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)를 운영 중임.

〈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현황〉

- ▶ 위 치 :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606호
- ▶ 현 위탁기간 : 2018.1.23.~2020.1.22
- ▶ 수행기관 :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
- ▶ 2020년 예산(안) : 11억 5천만원
(인건비 5억 2,550만원, 운영비 9천만원, 사업비 5억 3,450만원)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단서조항 “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

▶ 운영인력 : 10명 (센터장 1, 팀장 3, 매니저 6)



▶ 주요사무 :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, 교육, 컨설팅 지원 등

상담지원	교육지원	경영지원	홍보 및 정보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담(전화, 방문, 온라인) • 맞춤형상담(법률, 회계 등) • 상담시스템 고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동조합입문교육 • 협동조합설립준비교육 • 협동조합맞춤교육 • 경영개선 아카데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동조합 창업지원 • 맞춤형 성장지원 • 협업 및 규모화 지원 • 전략모델 개발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·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• 홈페이지·SNS 운영 •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

- 지원센터는 초기 상담지원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현재는 상담 지원, 교육지원, 경영지원, 홍보지원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.

○ 최근 3년간 지원센터를 통해 24,267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, 신규 설립된 협동조합의 49%가 센터의 상담과 교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 지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 왔음.

〈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실적〉

연도	합 계	전화상담	방문상담	기획 및 맞춤형상담
2017	9,104	8,545	431	128
2018	8,924	8,428	392	104
2019	6,239	5,951	202	86
합 계	24,267	22,924	1,025	318

- 그러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정 이후, 협동조합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, 최근들어 정체기를 거치면서 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.
 - 정부 합동 실태조사²⁾에 따르면,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9,547개 중 수익모델 미비,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협동조합이 4,447개(46.6%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생태계 확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.
- 한편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지도·점검에서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³⁾가 적발되었으므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.

다. 민간위탁 재계약 타당성

-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,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전문 상담, 설립신고 지원, 창업지원, 설립예정자·조합원·임직원 교육, 민간네트워크 및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됨.

2) 기획재정부 (2018.02),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

3) 2018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, 타 조직대비 관대한 기준의 경력환산율포, 채용 및 승진 시 규정 위반(채용시 인사위원회 미구성, 승진시 보수규정 위반) 등이 지적되었음.

-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이해도는 낮은 상황
이므로,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법률, 회계/세무, 인사/노무, 경영 등
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
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현 수탁기관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원센터를
위탁운영해 왔으며, 서울시 광역협의체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
등 400여개의 회원조합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.
- 또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개선되고 있고(2017년 62.21점→
2018년 81.58점), 양호한 수준의 고객서비스(2018년 종합만족도 85.8점)를
제공하고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
판단됨.

〈협동조합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〉

구분	계	공통사무	개별사무	사용자만족도
배 점	100	37	48	15
2017년 평가결과	62.21	14.9	37.07	10.24
2019년 평가결과	81.58	28.37	40.14	13.07

-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의 내실
있는 성장을 위해 각 부문별 지원기구의 통합운영을 염두해두고 사회적

경제지원센터(2018.1.23.~2021.1.22.)와의 위탁기간 종료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임⁴⁾.

-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제290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음.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·개정,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,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향후에는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4) 현행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서도 협동조합위원회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상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새로운 경제발전 대안모델로 주목받는 협동조합은 지난 '12년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'13년 「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나. 이에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」를 '14.2.1. 개소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 및 협동조합 정책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음
- 다. 이러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난 '13.9.13.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게 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개요

- 시설명 :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
- 위치 : 은평구 통일로 684(서울혁신파크 1동 6층)
- 규모 : 92.1㎡(센터장실, 사무실, 자료실, 회의실, 상담실 등)
- 조직구성 : 11명(센터장 1, 행정지원팀 2, 상담지원팀 3, 성장지원팀 5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'20.1.23. ~ '21.1.22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- 소요예산(안) : 1,086백만원
(인건비 526, 운영비 90, 사업비 470)
-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
 -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
 -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
 -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,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
 -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
 -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홍보
 -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해당 업무의 직접 수행시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 신규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 우려
-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및 상담지원 경험 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역협동팀 전민재(☎2133-5478)